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윤종오 · 조인철
정동영 · 김성환 · 이연희
한정애 · 이병진 · 채현일
이정문 · 안도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‘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’,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, 국제노동기구(ILO)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.

한편,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제1항 중 ‘그 밖의 정치단체’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(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),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.

이에,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,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

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교원은”을 “교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(교직원의 구분)제1항에 따른 교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(교직원의 구분)제1항에 따른 교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교원은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	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
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 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 무원의 구분) 또는 「지방공 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 분)에 규정된 공무원. 다만,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, 국회 부의장의 수 석비서관 · 비서관 · 비서 · 행 정보조요원, 국회 상임위원회 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·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 조요원, 국회의원의 보좌관 · 비서관 · 비서, 국회 교섭단체	1.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대표위원의 행정비서관, 국회
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·행
정보조요원과 「고등교육법」
제14조(교직원의 구분)제1항
·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
한다.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1항
·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
한 사립학교의 교원

3. 4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교원, 「초·
중등교육법」 제19조(교직원
의 구분)제1항에 따른 교원
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(교
직원의 구분)제1항에 따른 교
원은-----.

<삭제>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
된 교원은 그 직을 수행하면서
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
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
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
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
하여서는 아니 된다.